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5세 보육료 月 20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건설·부동산·교통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기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 가설건축물을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하가 방식을 전환한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급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출산 지원금 50만원…75세 이상 틀니비용 50% 경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서울~진주 KTX 연결

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금융

▲대형유동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동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동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식품·산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읊자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읊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약값에 낸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우럭·참돌·낙지·미꾸라지·민물장

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부분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군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 영화관과 학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제유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제유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약값에 낸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

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 야생 동·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지역업체도 실업급여 수급 = 지역업체에게도 고용보험에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자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국제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은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 = 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의약품 7500여개 품목 가격 평균 14% 인하

시급 최저 4580원…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임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법무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

▲아동 등록·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세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이 성실히 고를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감액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임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법무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 = 입주계약자 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가 무이자로 2년간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인상 = 1개월 143만 9413원이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내년부터는 3.9% 인상된 149만 55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아동용 유모차 지원 = 내년부터 기초수급가구 18세 미만 뇌병변·지체증증장애인(1~2급)에게 1가구 1대(250만원)의 유모차가 지원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시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0%인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